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현영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0. 10. 28.(수), 14:00 ~ 16: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이유미,
정부희, 백운기, 김대관, 최종희,
신정일, 이정모, 정명섭, 이승우
(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2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공개)
3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공개)
4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내 기념식수	(공개)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개)
6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7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방안	(공개)
8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9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검토사항】

10	「해남 미황사 일원」 문화재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2건)	(공개)
----	-----------------------------	------

1.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심의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04. 6.24. 환경부 영산강 상류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협의
 - '04. 7. 8.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고시(***)
 - '05. 7. 6.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 '05.11.25.~27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위원 : 산업과 기후특성을 상징하는 표징적 의미가 있고, 퇴적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락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큼
 - *** 문화재위원 : 담양 하천습지와 함께 형성되어 자연성을 잘 보존되고 있는 우량한 대나무 군락이며, 지역 문화적 상징성을 잘 나타냄
 - *** **문화재위원 : 제방 내 존재하는 대나무 군락으로 일반적인 담양의 구릉지, 경락지에서 볼 수 없는 환경임
 - '05.12.21. 제1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검토(검토 결과 : 지정추진)
 - '06. 2. 2.~ 3. 4.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 : 대나무군락으로 인해 홍수 시 수위상승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할 것
 - ***(***) :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와 중첩) 지정동의 조건으로 동의함
 - *** : '담양 하천습지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개발협조 요청 시 승인 조건으로 동의함
 - '06. 3.22.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심의(심의결과 : 보류)
 - *** : 습지보전법에 의한 행정행위 보장, 습지보호지역 내 대나무 군락지의 문화적 가치, 안내판 설치, 천연기념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제반활동은 관할

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하여 시행할 것('16.4.7.)

- '19. 2.13. 2019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추가 조사 요청(*****)
- '20. 3. 9. 2020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0. 6.26.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20. 8.26.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가결)
- '20. 9. 7.~'20.10. 6. 지정예고(관보공고)
 - *****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하천습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홍보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지정동의. 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모니터링 및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
영문 Population of Bamboos in Taemok-ri, Damyang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군락)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N35°15'03", E126°53'51")
- 지정가치
 -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조건과 달리 자연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으로서,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수달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큼. 또한 대나무는 식용 및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가 큼
- 지정구역(조정) : 97필지(113,206㎡)
 - 당초(지정검토 시 /'20.8.26.) 94필지 110,858㎡ → 조정 97필지 113,206㎡
 - 조정사유 : 지정구역 면적조서에 일부 지번 누락(3필지 2,348㎡)
- 관리단체 : 담양군(담양군수)
- 주요현황
 - 수종 : 대나무(왕대, 솜대)
 - 대나무 종류 : 왕대, 솜대

-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 et Zucc.)
- 솜대(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 규 모 :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cm

라. 검토의견(***)**

- 담양이 죽세공 문화와 전통적인 관련이 깊고,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 동종의 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지정예고(관보공고/'20.9.7.~'20.10.6.)

- 제출의견 : *****)
 - 담양 하천습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서식 조건과 달리 하천변에 어우러진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으로 생태적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이 높아 우리 청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 하천습지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나 홍보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정에는 동의함
 - 다만, 국가문화재 지정 이후, 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모니터링 및 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2020.6.26.)

-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영상강 상류의 금성천과 증암천이 합쳐지는 곳에 넓게 펼쳐진 충적토 평야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변에 비교적 높게 조성된 둔치에 대나무가 밀생됨
 - 이곳은 대나무뿐 만 아니라 습지식물도 많아서 습지보존지구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함
 -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등이

기록되어 있음.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공물로 진상되었으며, 『부역실총賦役實摠』에 담양은 죽력竹瀝·죽전竹箭·채상彩箱·진소眞梳가 공물로 생산됨.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명산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와 세대삿갓이 소개되었음

- 담양지역의 죽세공예품은 생활도구로 조선시대부터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전주에서 이 곳 향교리에 이사 온 김씨 노부부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참빗을 만들었다는 추성지(秋成誌)의 기록과 전통 있는 대나무 물레나 바늘상자 등이 뒷받침해 주고 있음

* 대나무 관련 문화재 현황(담양지역)

구 분	지 정 종 목
국가지정	채상장(彩箱匠) /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1975. 1)
시도지정	참빗장 /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1986.11.)
	담양죽렴장(潭陽竹簾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23호(1990.2.)
	낙죽장(烙竹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4호(2009.3.)
	접선장(扇子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8호(2010.5.)
	담양 선자장(摺扇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8-1호(2010.5.)

- 연혁·유래 및 특징

-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현재도 전국 죽렴 면적의 약34%를 차지할 만큼 어느 곳이든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고장임
- 1909년 ‘공업전습소’ 설치, 1915년 참빗제조업자들의 ‘진소계眞梳契’가 조직되었으며, 진소계는 1920년 12월 ‘담양산업조합’이란 이름으로 바뀜.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전라남도개람全羅南道概覽』에 담양은 1910년 전후로 죽세품 총생산량이 117,536원에 달하던 것이 1924년에는 연간 생산액만 4,200만원에 달하였다고 적고 있음
- 1945년 이후 담양의 대나무는 ‘생금밭’으로 불리울 정도로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며, 농가가 생산한 죽세품은 미국을 비롯 5개국에 수출한 바 있고, 1966년 관 주도의 ‘죽세공예센터’가 건립될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1970년 후반 화학 재료 제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담양 죽세공예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됨.



죽세공예센터 작업모습(70.12.31)



죽물시장(70.11.24)

- 영산강의 상류 강의리부터 연결된 태목리 대나무밭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영산강 홍수방지와 유속감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면서 현재의 면적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제방 축조는 영산강 하천 범람과 홍수 방지를 위해 1958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조하기 시작하여 1967~1969(2차), 1971~1975(3차)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대나무 군락지 대규모 간벌이 이루어졌으며, 하천습지 입구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영산강 8경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 인근 영산강변의 담양하천습지와 더불어 생태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환경부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004.7.8.지정)

※ 천연기념물·명승과 습지보호지역 중복지정현황

문화재명	습지보호지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66.7.23.)	낙동강하구('99.8.9.)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73.7.10.)	대암산용늪('99.8.9.) / 람사르습지 등록('97.3.28.)
창녕 우포늪천연보호구역('11.1.13.)	우포늪('99.8.9.) / 람사르습지 등록('98.3.2.)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75.2.21.)	한강하구('06.4.17.)
제주 물장오리 오름('10.10.28.)	제주 물장오리 오름('09.10.1.) / 람사르습지 등록('08.10.13.)
영월 한반도 지형('11.6.10.)	영월 한반도습지('12.1.13.) / 람사르습지 등록('15.5.13.)

- 2019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하천습지 내 천연기념물 수달과 기타 멸종위기야생생물이 관찰되고 있음
- 담양하천습지 지정 당시에 자연형 하천유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하천습지주변 제방 일원으로 도로 및 여가활동에 의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등이 발견됨

※ 2019년 제3차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담양하천습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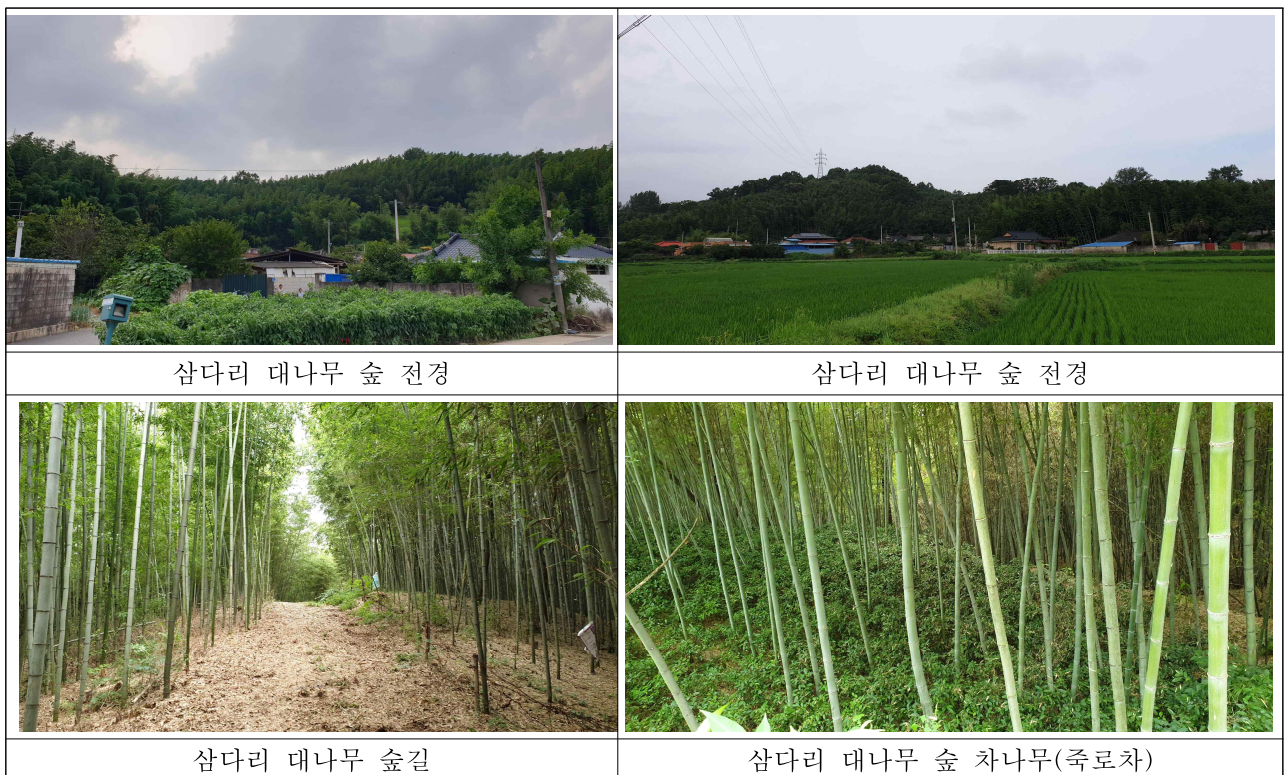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발견 개체
식 생	왕버들군락, 선버들군락 달뿌리풀군락, 물억새군락, 줄군락, 왕대군락 등
조 류	황조롱이, 원앙,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어 류	돌마자, 참물개, 눈동자개, 피라미, 붕어 등
양서·파충류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자라,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모사 등

· 담양 대나무밭은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대나무 군락지 비교(***)

연 번	소 재 지	면 적(m ²)			소 유	비 고
		계	대나무	그 외		
1	담양읍 삼다리 산47외 7필지*	188,285	155,046	31,586	산림청	농업유산
2	담양읍 삼다리 산44외 56필지*	148,063	138,269	9,589	사 유	농업유산
3	대전면 태목리 656-2외 93필지	110,898	110,898	-	국유, 사유	담양습지
4	담양읍 향교리 산44외 35필지	91,300	91,300	-	담양군/사유	죽녹원
5	담양읍 만성리 산1외 5필지	27,995	27,995	-	담양군	

* 담양읍 삼다리 : 2014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대나무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소나무숲길>, <편백숲길>, <삼나무숲길>, <둘레길> 등 산책길과 팔각정자, 명상쉼터,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시루산 산림욕장>을 개장. 대나무 숲 아래에 자생 차나무(죽로차)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차나무를 식재하면서 차나무 면적을 넓혀가고 있으며, 구절초 단지 등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있고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담양의 죽세공예품 등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음
-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식물>
 -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 또는 생육지

○ 지정 대상 및 범위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 97필지, 113,206㎡

○ 보호관리사항 검토

- 마을주민들이 간혹 이용하는 차로가 숲을 관통하여 양분하고 있으므로 대나무숲을 보전과 동시에 문화재 가치를 살려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관람동선으로 전환하는 등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장치된 가로수들이 대나무들과 일부 경쟁적인 관계에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음
- 기존 습지보전지역 구역설정에 따라 데크길이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정 구역 전체를 보고 동선재확정이 필요함
- 식재되었던 대나무숲이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최고의 대나무숲 경관을 느끼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숲 내 대나무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 단 나무와 함께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종합적 생태 파악이 필요함

○ 관계전문가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 태목리 대나무 숲은 하천변 농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안방재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나무 숲의 면적은 둔치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확대되어 죽세품의 생산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대나무 생산에 기여하였을 것임
-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밭과 죽세품으로 손꼽히는 고장으로서 태목리 대나무 숲은 왕대와 솜대가 섞여 자라며 하천변에 존재하는 대나무 숲으로써 규모가 크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담양의 많은 죽세품 관련 무형문화재와 연계되어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으로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담양이 대나무 문화와 전통적인 관련이 깊다는 점, 아직까지 대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함께 하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자료의 구비가 필요함. 따라서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에 대한 발굴, 정확한 면적과 지역 내 다른 숲과의 비교조사, 보전대상 동식물현황, 숲 내 문화재적 가치를 저해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前문화재위원>

- 전통 유용식물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담양의 대숲은 오늘날 값싼 공산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던 죽제품이 사라짐에 따라 그 재료인 대나무가 자라던 대밭도 줄어들고 있음
- 담양 태목리의 대나무 군락은 담양의 전통문화경관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음

○ 지자체(***) 의견(2020.3.4.)

- 담양군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동의하며, 지정 심의 시 다음사항 고려
 - 대나무 군락 관리시 매년 반복되는 간벌, 장마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대나무 군락 내 쓰러진 대나무 벌채 등 일련의 관리행위에 대해 관리단체(담양군)의 판단 하에 우선 실시하고 추후 신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주민(태목리 태암마을) 천연기념물 지정 이의제기 없음

바. 참고사항

□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 : 97필지, 113,20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15,811	113,206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9-1	천	4,182	4,182	-	국(***)
	19-2	천	955	955	-	국(***)
	19-3	천	628	628	-	국(***)
	19-4	천	1,940	1,940	-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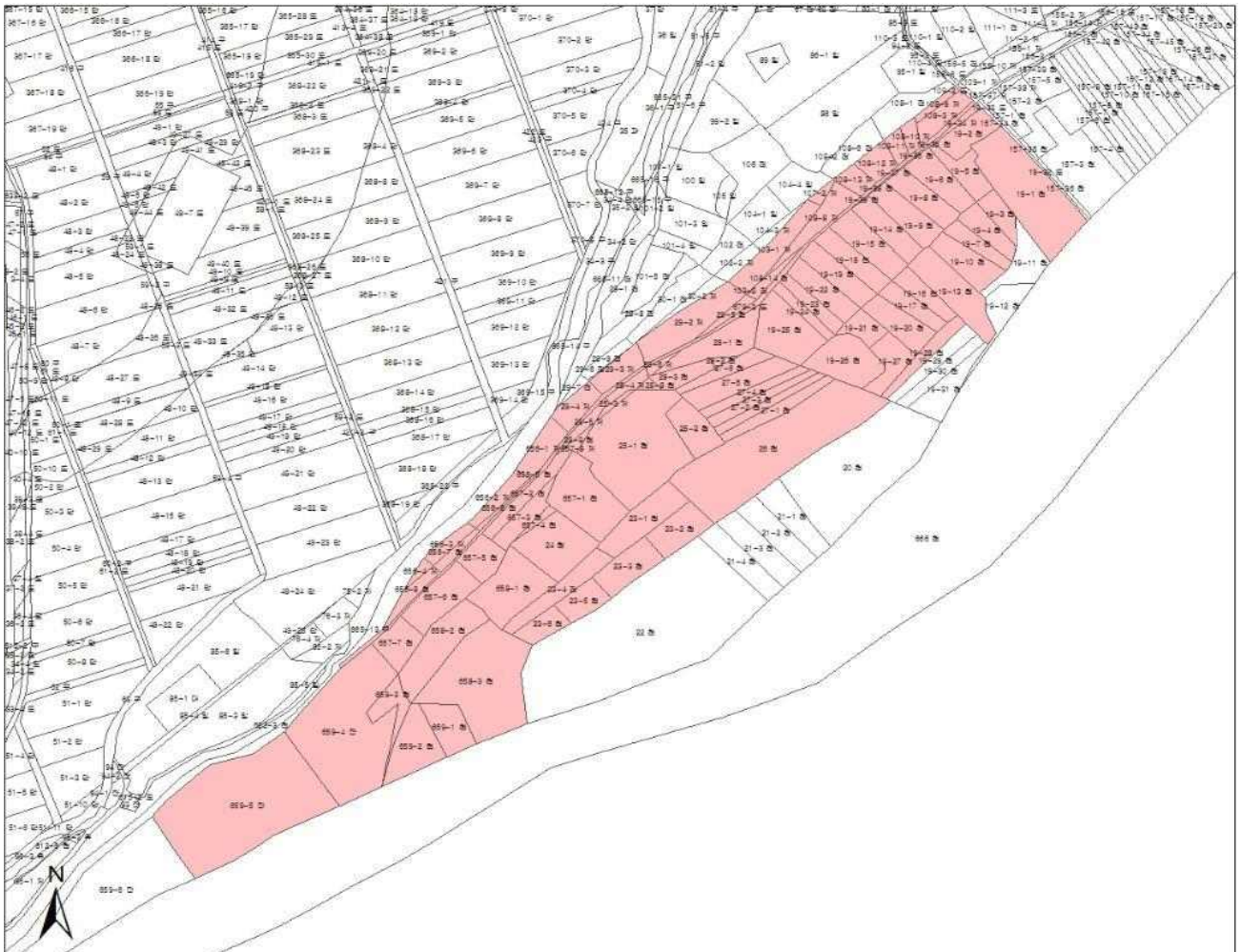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9-5	천	896	896	-	국(***)
	19-6	천	1,117	1,117	-	국(***)
	19-7	천	638	638	-	국(***)
	19-8	천	1,140	1,140	-	국(***)
	19-9	천	1,190	1,190	-	국(***)
	19-10	천	1,263	1,263	-	국(***)
	19-13	천	1,940	1,940	-	국(***)
	19-14	천	1,084	1,084	-	국(***)
	19-15	천	1,283	1,283	-	국(***)
	19-16	천	737	737	-	국(***)
	19-17	천	678	678	-	국(***)
	19-18	천	1,035	1,035	-	국(***)
	19-19	천	1,160	1,160	-	국(***)
	19-20	천	1,246	1,246	-	국(***)
	19-21	천	618	618	-	국(***)
	19-22	천	1,038	1,038	-	국(***)
	19-23	천	615	615	-	국(***)
	19-24	천	483	483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219	***
	19-25	천	2,089	2,089	-	국(***)
	19-26	천	1,706	1,706	-	국(***)
	19-27	천	959	959	-	국(***)
	19-28	천	800	800	-	국(***)
	19-34	제	202	202	-	국(***)
	19-35	천	10	10	-	국(***)
	19-36	제	46	46	-	국(***)
	19-37	제	23	23	-	국(***)
	19-38	제	20	20	-	국(***)
	19-39	제	10	10	-	국(***)
	23-1	천	1,607	1,607	-	국(***)
	23-2	천	1,243	1,243	-	국(***)
	23-3	천	1,293	1,293	-	국(***)
	23-4	천	1,342	1,342	-	국(***)
	23-5	천	803	803	-	국(***)
	23-6	천	668	668	-	국(***)
	24	천	2,083	2,083	-	국(***)
	25-1	천	5,385	5,385	-	국(***)
	25-2	천	1,131	1,131	-	국(***)
	25-3	제	132	132	-	국(***)
	26	천	7,263	7,263	-	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27-1	천	879	879	-	국(***)
	27-2	천	575	575	-	국(***)
	27-3	천	638	638	-	국(***)
	27-4	천	701	701	-	국(***)
	27-5	천	1,421	1,421	-	국(***)
	27-6	천	724	724	-	국(***)
	28-1	전	1,531	1,531	-	국(***)
	28-2	천	99	99	-	국(***)
	28-3	천	608	608	-	국(***)
	28-4	제	311	311	-	국(***)
	28-5	제	278	278	-	국(***)
	28-6	제	126	126	-	국(***)
	28-8	전	112	112	-	국(***)
	28-9	전	136	136	-	국(***)
	29-2	제	2,023	2,023	-	국(***)
	29-3	제	774	774	-	국(***)
	29-4	제	711	711	-	국(***)
	29-5	제	291	291	-	국(***)
	103-1	제	1,306	1,306	-	국(***)
	103-2	전	7	7	-	국(***)
	107-2	제	169	169	-	국(***)
	108-3	제	747	747	-	국(***)
	108-8	전	1,055	1,055	-	국(***)
	108-9	제	235	235	-	국(***)
	108-10	제	311	311	-	국(***)
	108-11	제	298	298	-	국(***)
	108-12	제	625	625	-	국(***)
	108-13	제	446	446	-	국(***)
	108-14	천	301	301	-	국(***)
	656-1	제	863	863	-	국(***)
	656-2	제	512	512	-	국(***)
	656-3	제	387	387	-	국(***)
	656-4	제	152	152	-	국(***)
	656-5	천	20	20	-	국(***)
	656-6	천	195	195	-	국(***)
	656-7	천	294	294	-	국(***)
	656-8	전	460	460	-	국(***)
	657-1	천	2,486	2,486	-	국(***)
	657-2	천	873	873	-	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657-3	천	850	850	-	국(***)
	657-4	천	129	129	-	국(***)
	657-5	천	883	883	-	국(***)
	657-6	천	1,560	1,560	-	국(***)
	657-7	천	949	949	-	국(***)
	657-8	제	17	17	-	국(***)
	658-1	천	2,182	2,182	-	국(***)
	658-2	천	2,288	2,288	-	국(***)
	658-3	천	5,157	5,157	-	국(***)
	659-1	천	1,131	1,131	-	국(***)
	659-2	잡	1,666	1,666	-	국(***)
	659-3	잡	793	793	-	국(***)
	659-4	잡	6,612	6,612	-	국(***)
	659-5	잡	8,909	8,909	-	국(***)
	679-2	도	4,324	1,719	-	국(***)

* 누락된 지번 포함 : 3필지(107-2, 656-8, 679-2)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문화재구역 지정도면(안)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2명

2.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20. 1. 6. 2020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20. 7.21.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 ****)
 - '20. 7.27.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문화재전문위원 검토
 - '20. 8.26.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가결)
 - '20. 9. 2.~'20.10.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관보공고)
 - 제출의견 :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외 5필지
 - 지정일 : 2007.8.9.
- (3) 신청(추가지정)내용 : 1필지 896㎡

(단위 : m²)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확대지정 신청면적			확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	2,606	2,606	1	896	896	7	3,502	3,502

(4) 확대지정 사유

- 자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주변 경작행위로 농약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 *** · *** · *** 문화재전문위원 / 202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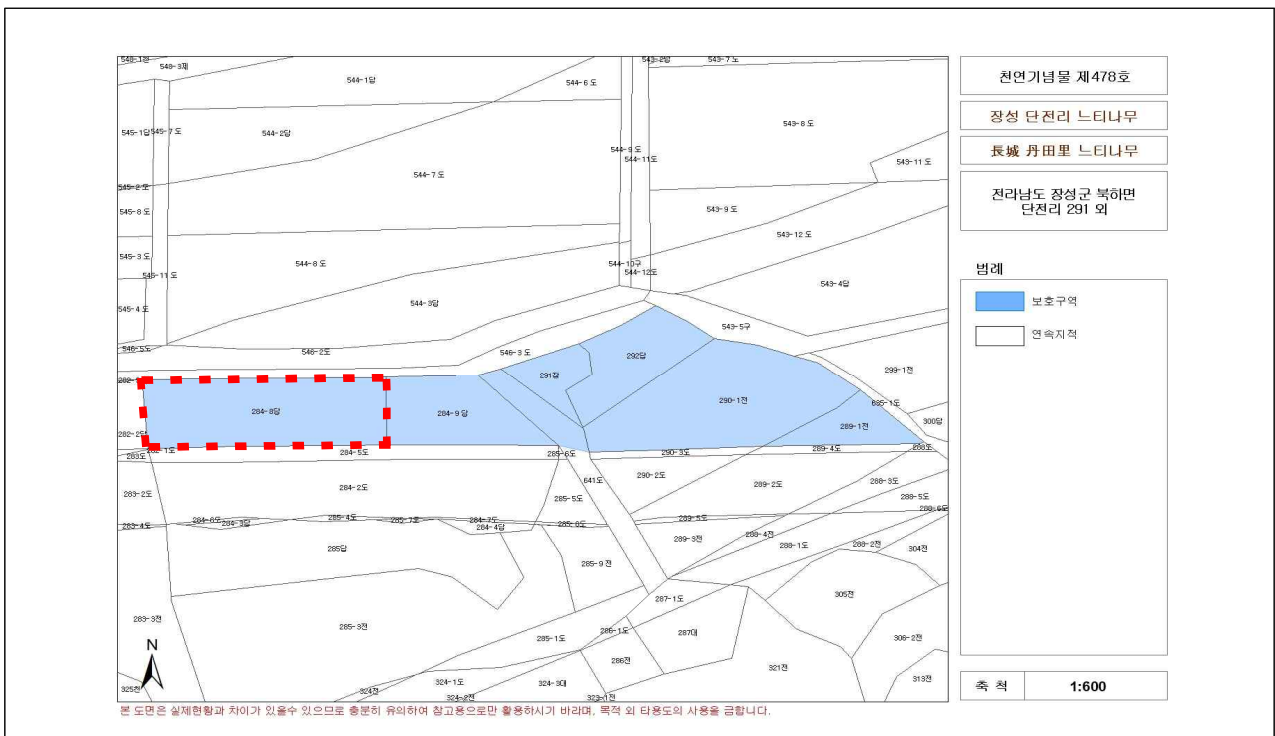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주변 1필지(896㎡)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건으로, 느티나무의 뿌리생육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호구역 추가지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 면적조사

지정 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4-8 답	896㎡	896㎡	** ** * ** * ** * ***-****	** *	
계(보호구역)		1필지	896㎡	896㎡			

사. 참고자료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안)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위성사진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현장사진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2명

3.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7.29.)에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일원
 - 지정일 : 2009.12.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합천 해인사 대장전(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체험실) 건립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등 5필지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7.29.)	금회 신청	비고
내용	대장전 (1동)	대장전·별동 (2동)	증 1동
규모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감 1개층
최고높이	14.87m	11.87m	감 3.00m
건축면적	1,137.26㎡	994.72㎡	감142.54㎡
연면적	2,693.36㎡	1,908.14㎡	감 785.22㎡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붕)목구조·기와	좌동	
기타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	좌동	

- 사업비 : 50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20.10.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각 문화재별 이격거리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정구역 내부
<세계유산> 「해인사 장경판전」 (1995) 핵심구역에서 80m 이격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8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조감도>

<p>※ 건물용도 : 지상1층 : 인경분수정고, 세미나실 지상2층 : 고문서수정고</p>	<p>※ 건물용도 : - 지상1층 : 도서관 + 중앙홀 - 지상2층 : 자료실 + 중앙홀 - 지상3층 : 홍보관</p>	<p>당초 계획안</p> <p>※ 관리 및 관람동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단일 건물형태로 계획 ※ 지상1,2층의 바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 ※ 규모 : 지상 3층 / 건축면적 = 2693.36㎡ [814.74평]</p>
<p>※ 건물용도 : 지상1층 : 인경분수정고, 세미나실 지상2층 : 고문서수정고</p> <p>※ 건물용도 : 학예자실 및 관리사무소 ※ 건물용도 : 홍보관을 설치하여 수장영역과 홍보관 및 도서관 공간을 분리</p>	<p>※ 건물용도 : 홍보관 ※ 건물용도 : 도서관 + 중앙홀 ※ 건물용도 : 인경 체험관</p>	<p>변경 계획안</p> <p>※ 건물양상을 구간으로 지형에 따라 차등 기울기를 분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울기의 충고를 낮춤. ※ 규모 : 지상 2층 / 건축면적 = 1908.14㎡ [577.21평]</p>

<당초와 변경된 계획의 대조>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에 세계기록유산홍보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6.9.) ※ 최초 신청에 대한 의견임

<*** 문화재위원>

- 신청 사업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정구역 내 대장전(장서각 및 홍보관) 1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현재 제안된 건축물의 규모는 사찰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 등의 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 등이 계획안 반영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가야산 해인사 대장전(장서각 및 홍보관) 1동 신축의 위치는 사적과 인접한 구역으로 목공소 등 기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위치에 대장전을 신축하는 사업임
- 제안된 설계안은 기존 건축물보다 높이가 1층이 높고 건축면적도 확장하여 설계된 것임
- 제안된 안에서 건물을 2층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높이가 인접한 바깥도로 레벨을 넘지 않아야 하며, 면적과 규모를 축소하여 기존건물 규모로 신축할 경우 경내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진입 시 경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진입부의 입면 구성은 전문가의 설계 자문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 현재 제시된 건축물의 규모나 외관(안)은 장경관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니 국내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 등 요인이 장경관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

<*** 문화재위원>

-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1898년 인출한 인경본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예정 위치는 중심사역과 근접한 탓에 해인사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중심사역보다 대지의 GL이 낮고 기존의 불법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건립위치로서 검토할 여지는 지닌 것으로 판단됨. 불자뿐만 아니라 해인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동선 등을 감안하면 제시된 위치는 사용면에서 효율이 높은 지점으로 여겨짐
- 계획된 건물 규모는 소요면적을 매스화된 단일 건물로 수용하려다 보니 규모가 지나치게 높고 커서 사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건물의 양식은 건립될 시설의 내용과 사용자의 편의만 도모한다면 현대식을 채택할 수도 있으나 중심사역과의 거리와 주변의 건물 상황으로 볼 때 전통 양식을 근간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번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를 단일건물로 계획하기 보다는 대지의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지상부를 분동하고 건물 전체의 높이(층고)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해당 대지와 중심사역 사이의 기존 수목구간은 되도록 손대지 않고, 오히려 관목류 등 수목을 보식하여 차폐와 경관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당호는 대장전으로 제시하였는데, 1898년 인출할 대장경을 보존·관리하는 일정한 면적에 대장전으로 당호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시설 명칭은 홍보와 체험이 반영된 명칭으로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자체(*) 의견(2020.3.16., 2020.10.15. *의견동일)**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합천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사업으로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대상으로 사료됨
- 이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보류
 - 건립 위치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2명, 부결 4명, 보류 3명, 제척 2명

4.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내 기념식수

가. 제안사항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내 기념식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내 기념식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9.23.)에서 '기념식수(이팝나무)의 후계목 검사방법 재확인 필요'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단, 기념비 설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 지정일 : 1968. 11. 2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마령초 100주년 기념 이팝나무 식재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번지 내
 - 사업내용
 - 기념식수(이팝나무 2주)
 - 1번목 : 근원직경 0.30m, H5.0m±0.5m, 수관폭 3m±0.5m
 - 2번목 : 근원직경 0.25m, H5.0m±0.5m, 수관폭 3m±0.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내에 기념식수를 시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20.10.20.)

<*** 문화재위원>

-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의 후계목을 기념식수 하는데 있어서, 식재예정 나무의 후계목인지의 여부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 검사한 바, 회신받은 내용에 있어서, 후계목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검사결과인지를 재확인을 하고자 한 사항임
- 수목원 유전적 변이는 수종간, 군집간, 동일한 종의 개체간, 동일 모수의 클론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지리 이팝나무의 경우 검사결과 나타난 변이의 범주가 동일한 개체에서 증식된 개체들의 변이의 범주인지를 확인하고자 함. 이 검사를 진행한 ***** ***** *** **에게 재확인한 바 천연기념물에서 후계목으로 타당한 개체임을 확인함

(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9.16.)

<*** 문화재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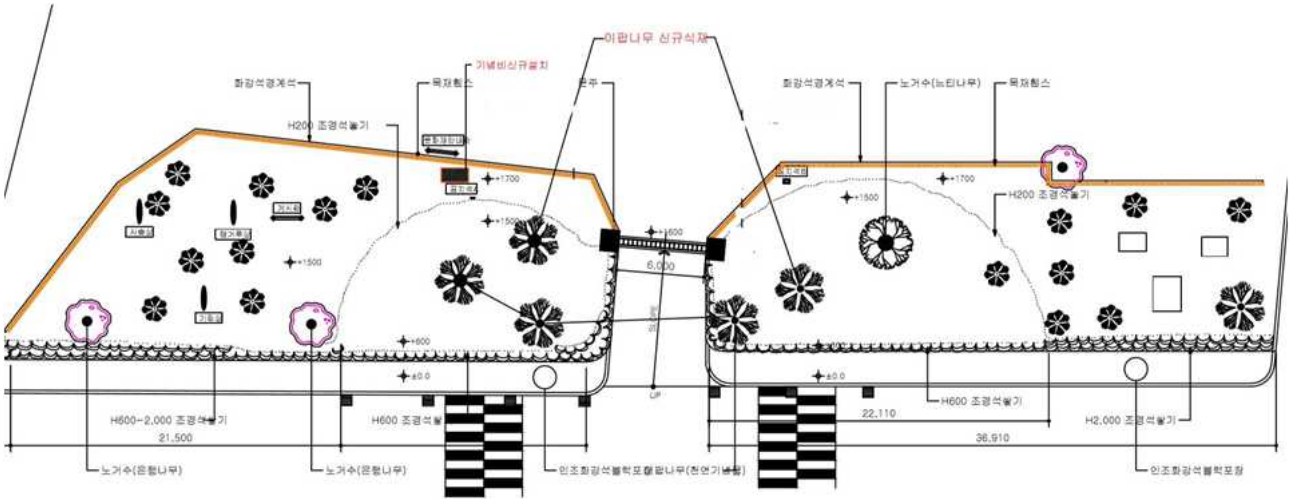
- 기념목으로 심고자 하는 이팝나무 2주는 과거 천연기념물인 평지리 이팝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실생묘로 육성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기존의 천연기념물과 유사한 것으로 판정되어 천연기념물 주변에 식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신청위치는 현존하는 천연기념물과 가까이 있어 식재 시 뿌리의 경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어 현존 천연기념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100주년 기념비는 신청위치에 설치할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위치보다 북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임

(3) 지자체(***) 의견(202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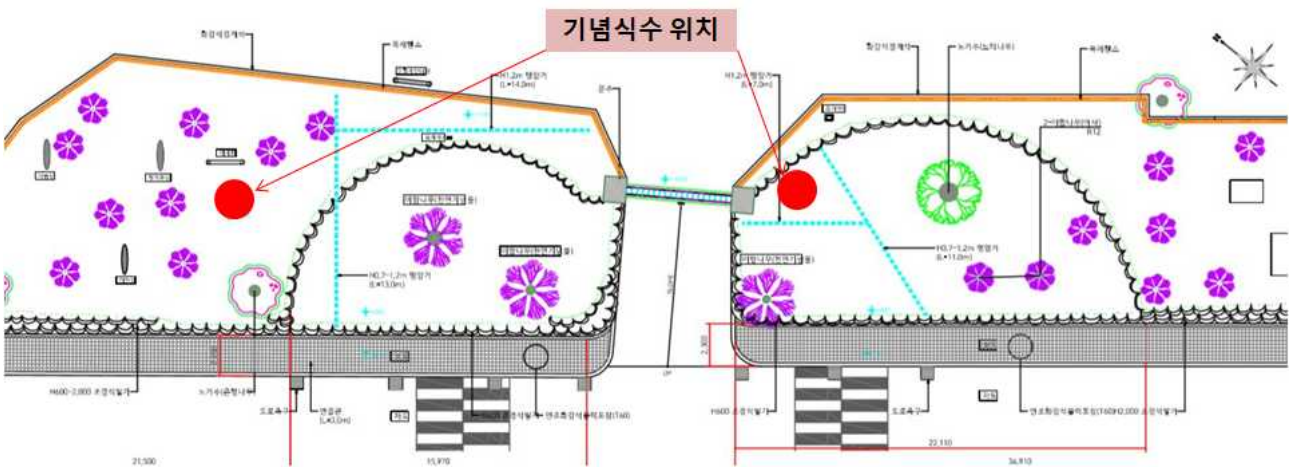
- 현재 살아남은 이팝나무는 3주이며, 대부분 점질토양으로 복토가 되어져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아온 상태로 수세가 안좋은 상태이고,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의 피해를 받아 이팝나무의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고사된 가지가 많아 수형이 파괴되었음
- 후계목 식재와 기념비 설치에 따른 터파기 시 현장에 입회하여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팝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 참고자료

□ 기념식수 계획도(신청안)



□ 기념식수 계획도(검토안)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검토안대로 기념식수 위치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11명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물은 2020년 제7차 문화재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8.26.)에서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2002.2.2.)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616번지 등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돈내코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2279
 -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철거)	1차 신청/부결 (2020.8.26.)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1,081㎡	1,081㎡	1,081㎡	
건축면적	194.86㎡	253.68㎡	253.68㎡	-
건축연면적	196.66㎡	424.38㎡	424.38㎡	-
최고높이	5.2m (지상1층, 경사지붕)	8.6m (지상2층, 평지붕)	8.25m (지상1층, 지하1층 평지붕)	감0.35m

기타공사	절토량 250m ³ , 기존 경계 돌담 및 석축 유지·보강, 신설돌담 L=21.72m, H1.2m	절토량 500m ³ , 기존 경계 돌담 및 석축 유지·보강, 신설돌담 L=21.72m, H1.2m	절토량 증250m ³
------	--	--	---------------------------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15m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에서 약115m 이격된 1구역에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8.26.)에서 부결되어 최고 높이(0.35m)를 낮춰 신청하였으나,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20.10.22.>

- 금번 신청건은 건축법상 가중 평균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물 높이가 4.6m라고 하지만, 지하 1층 외벽의 노출로 인해 건축물이 지상 2층(8.25m)으로 인지되는 바, 문화재 주변 경관을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차후 땅에 대한 형질을 변경해서 상기 사항과 같은 관련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난개발 사례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2020.8.18.>

- 금번 신청건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높이 8.6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 대지 일원은 문화재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사항으로 인해 문화재 경관을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축 범주를 벗어남

(2) 지자체 의견

<***** 의견 / 2020.8.19.>

- 신청지는 현재 1층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이 존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대지는 경사지로 도로와 레벨차가 발생하고 계획지반선에서의 높이와 현지반선에서의 높이차이가 발생함. 신축건물 용도는 공공시설물(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로 공익목적의 건축물 신축이며 허용기준 상 동일한 구역 내 2층 주택이 기 신축되어 있음

- 건축물 용도 및 신축목적, 동일한 허용기준 구역 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 신청대지여건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보호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견 / 2020.8.21.>

- 신청 건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2구역(지정구역과 약110m 이격됨) 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항으로, 경사지 내 신축하는 점(최고높이 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참고자료

-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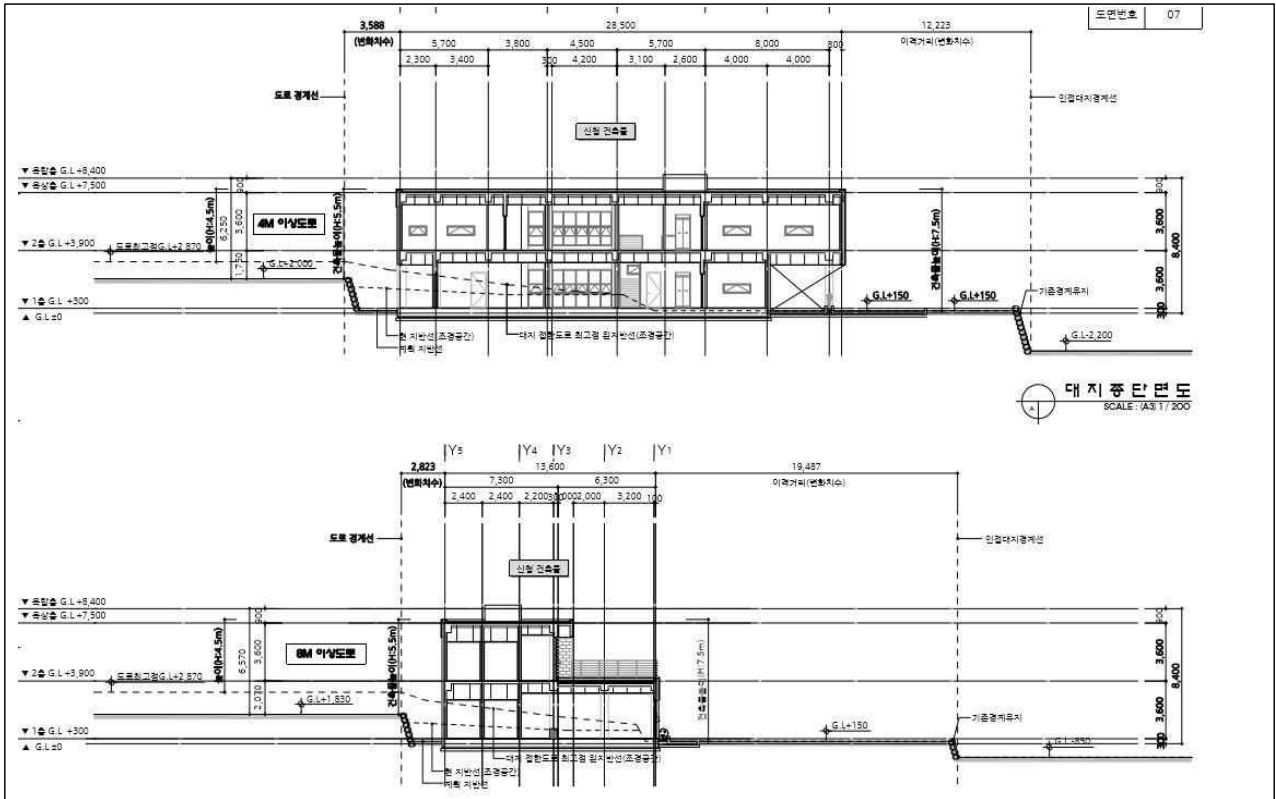


1차 신청(202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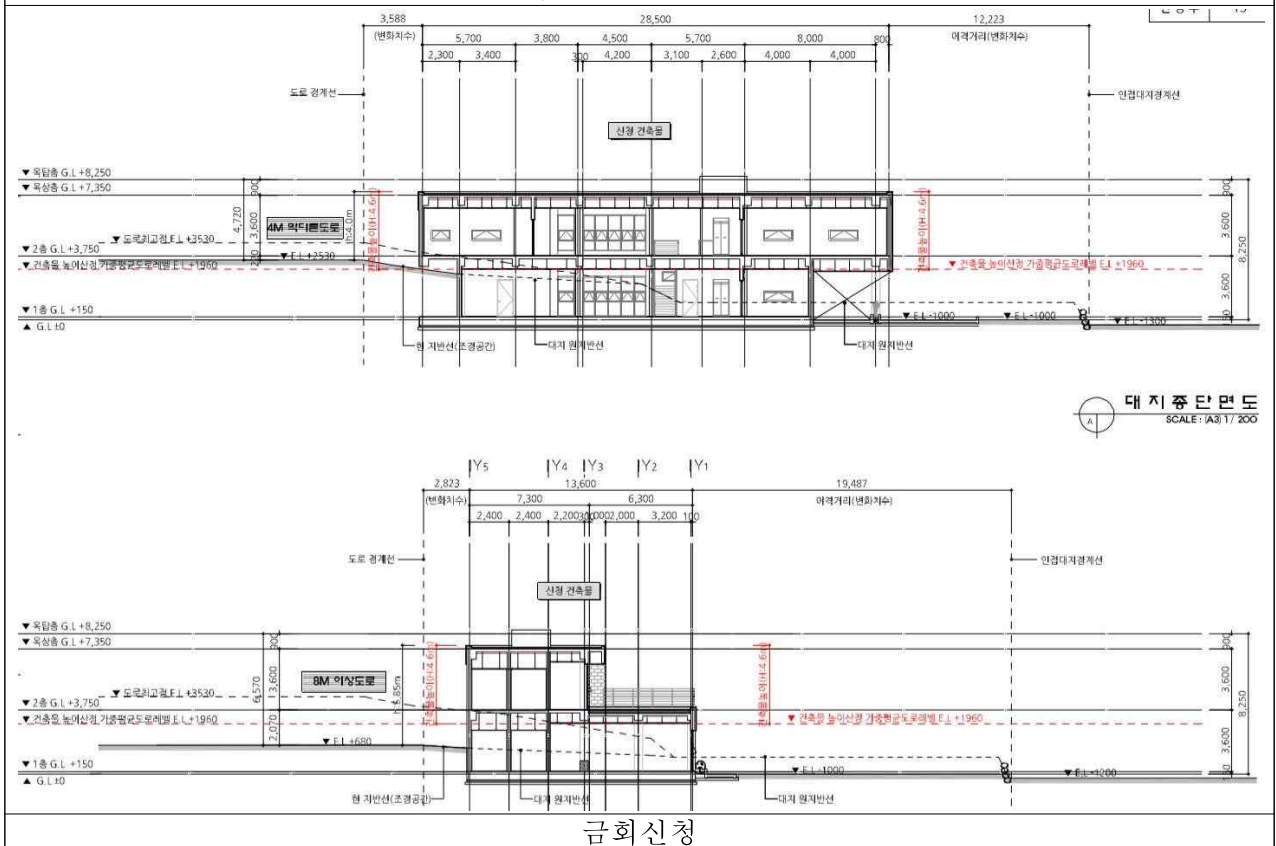


금회 신청

□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단면도



1차 신청(2020.8.26.)



금회신청

아. 의결사항

○ 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부결 12명

6.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559호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9호 「상주 두곡리 뽕나무」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 지정일 : 2020.2.3.
- (3) 신청내용 : 「상주 두곡리 뽕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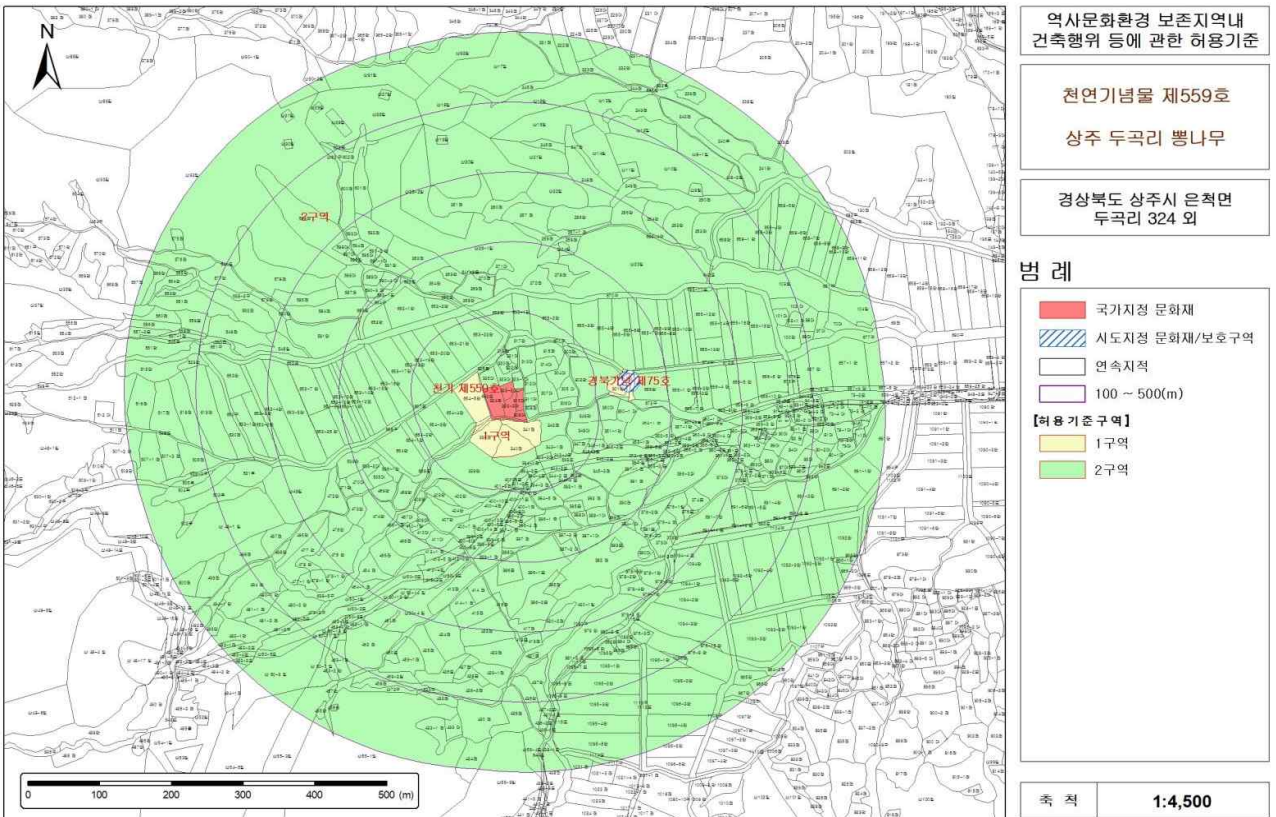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신청(안)	비고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빛공해(태양열집열판의 설치) 등은 개별 심의함. ○ 빛 관련시설(예 : 야간조명, 태양광 집열판의 설치 등)등은 개별 심의함.(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 2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함)
--	--

라. 검토의견 (***)**

- 상주시 신청안은 기존 시도지정문화재(경상북도 기념물 제1호 상주 은척면의 뽕나무, 경상북도 기념물 제75호 상주 두곡리 은행나무) 허용기준에서 상주 두곡리 뽕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됨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500m로 확대하여 신청한 사항임.
- 기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큰 변동 없이 2구역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상주시 신청안에서 뽕나무 서쪽과 남쪽의 654-5외 7필지의 논과 밭 등은 생육공간 확보 등을 위해 2구역에서 1구역으로 조정하고, 일부 공통사항의 용어 및 내용은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전문위원 / 2020.9.28.)**

- 상주 두곡리 뽕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을 문화재지정구역으로 확보하여 동쪽과 북쪽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봄
- 서쪽과 남쪽의 654-5, 338, 340, 341번지의 논과 밭은 뽕나무의 공간과 바람길 확보를 위해 1구역으로 확보하고 그 외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부분은 상주시 신청안대로 유지해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결과

- 공고기관 : ***(*****)
- 공고기간 : 2020.04.28. ~ 2020.5.18.(20일)
- 공고결과 : 1건 의견 제출(*** / 2020.5.14.)
 - 주민들은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택은 수십년 된 노후 주택들입니다. 주택의 개·보수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 등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곡리 324, 323, 310번지는 뽕나무와 인접해 있으니, 매입을 원합니다. 두곡리에는 도지정 은행나무와 추진 확정된 뽕나무 사이가 인접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정 전과 후에 법규가 상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 참고사항

○ 1구역 신청 면적 조서(문화재청) : 7필지, 7,57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경북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38	전	1,397	1,397	사유지	
	340	전	2,438	1,532	"	
	341	전	1,177	1,177	"	
	654-5	답	1,949	1,949	"	
	638-5	구거	6,684	121	국유지(****)	
	640	도로	3,029	1299	국유지(***)	
	669	도로	1,501	96	국유지(***)	
합계			18,175	7,571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조건부 가결 12명

7.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방안

가. 제안사항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9.4.4.) 및 평가회의(2019.8.22.)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210-7번지 일원
- (2) 보존대상 :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 화석문화재
- (3) 보존조치(안) : 현지보존(매장문화재법 제14조제1항제1호)
 - *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4) 보존범위(안) : 24,500m²





(5) 처리경과

- '18.12.26. : 발굴허가(****→***, 발굴면적 : 2,264m²)
- '19. 4. 4. : 전문가 검토회의
 - 참석자 : *** 문화재위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장
 - 검토의견 : 암반 슬라이딩과 균열의 진행으로 화석층 특성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존조치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화석층의 지속적인 풍화 침식에 의해 화석의 추가적인 훼손이 예상되므로 실효적인 보존방안인 이전보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5.13. : 발굴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평가 회의(1차)
 - 참석자 : *** 문화재위원, *** 前전문문화재위원, *** 보존기술연구실장,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 사적분과 전문위원
 - 평가의견 : 보존방법(현지보존, 이전보존) 결정을 위한 정량적인 근거자료(화석 인공 풍화 시험 등) 확보 후 2차 보존회의 시 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방법 결정
- '19.5~6. : 화석 인공풍화시험(***) , 지반안정성 조사(*****) 실시
- '19.8.22. : 발굴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평가 회의(2차)
 - 참석자 : *** 문화재위원, *** 전(前) 문화재위원, *** 보존기술연구실장,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 사적분과 전문위원
 - 평가결과 : 평균 82.52점(현지보존)
 - 평가의견 : 세계적 수준의 학술가치를 지닌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보존·전시·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원형보존이 필요
- '19.12.~'20.10. : 화석 산지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 화석 산지 출입통제, 화석 산지 주변 정리(발자국 주변 수성백묵 제거 등), 방수포 신규 설치, 우수 차단수로 설치, 지반안정성 위한 압성토 추가 설치 등
 -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진주뿌리산단 산업단지계획 변경 중
 - *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공원 결정(공원결정 면적 24,500m²)

라. 검토의견(*****)

- 세계적 수준의 학술가치를 가진 화석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보존·전시·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조치가 요구됨.

마.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의견(2019.5.10.)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인 *****(*)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700억원을 대출받아 시행중인 사업으로 2020년 3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화석 산지는 8개의 지층에 8,000여 점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세계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지, 공룡발자국 화석최대밀집지인 ‘라거슈타테’인증 지역, 세계최초 소형육식공룡 ‘미니사우리푸스’발바닥 피부 화석 발견지, 세계 최소의 공룡발자국화석 발견지, 아시아 최초의 거북 보행렬 발견지로 우리의 세계적인 자연유산임.
 - * 라거슈타테 :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뛰어난 보존력을 지닌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 발견 장소
- 이런 중요 문화재는 현지보존 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재정부담으로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현지보존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자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사업시행자인 *****(*)에서는 산업경기침체로 분양률(6.5%)이 극히 저조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어려움이 많은 현 상황에서 현지보존으로 결정될 시 분양면적 감소(510,917㎡⇒476,305㎡)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용지가 증가하여 엄청난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주게 됨으로 현지보존 조치로 침해되는 이익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매입비 및 보호각 설치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화석 산지는 균열, 박리·박락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적 측면에서 관람자의 안전과 화석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이 어려울 수 있음.

현지보존이 불가하여 이전보존으로 결정할 경우 화석문화재는 타지역으로 반출하지 않고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우리시 관내에 보관토록하여 지역 화석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람.
- 어느 문화유적이던지 보존이 가능하다면 현지보존이 마땅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이전보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는 문화재청의 결정의견을 존중하며 결정된 의견에 따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힘쓸 것임.

바. 참고사진



진주 정촌 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진주 정촌 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 전경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2명

8.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명승 제118호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 「서울 성북동 별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 지 정 일 : 2020.9.2.
- (3) 신청내용 : 「서울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지정구역밖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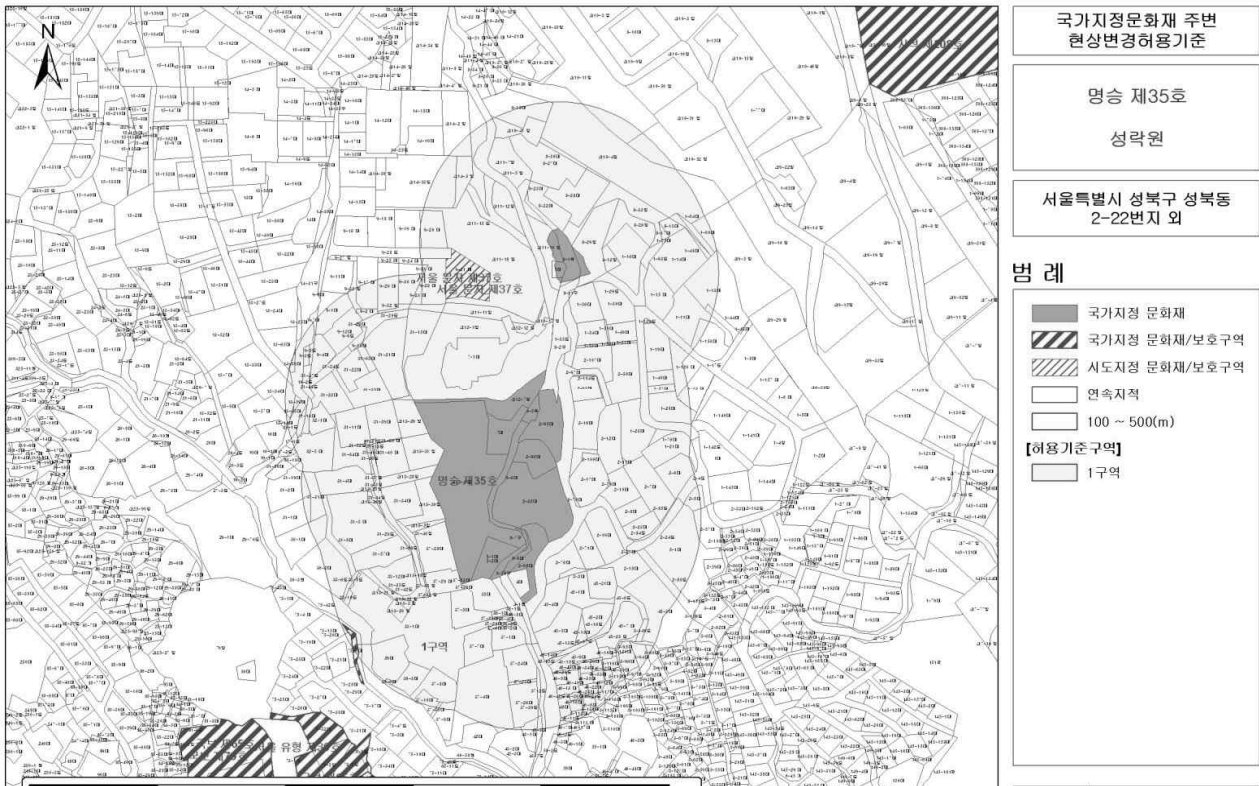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서울 성북동 별서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구역의 범위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도면은 신청안과 동일

마. 참고자료 [이전(명승 제35호 성락원)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지정구역밖 ~100m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3명, 조건부 가결 9명

9.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물은 2020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6.24.)에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 지정일 : 2004.11.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9-12, 289-3번지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6.24.)	금회 신청	비고
내용	근린생활시설 2동 (음식점,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1동 (음식점)	감 1동
규모	2층 x 2동	1층 x 1동	감 2.8m
최고높이	10m	7.2m	
건축면적	168㎡ (84 x 2동)	166.3㎡ (166.3 x 1동)	감1.7㎡
연면적	336㎡ (168 x 2동)	166.3㎡ (166.3 x 1동)	감 169㎡
기타	벽돌쌓기+징크 외장	좌동	

- 사업기간 : 2020.7.1. ~ 2021.7.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1) *** 문화재위원(2020.10.7.)

- 사업 대상지는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1구역 및 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석강 층암절벽 위에 위치하여 격포 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각적 노출이 높은 지점임. 한편, 사업 부지에 인접하여 호텔 등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전 신청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건물 2개동을 1개동으로 붙이고 건물의 규모를 2층에서 1층으로 낮추어 건축 연면적이 감소하였지만, 건물의 최고 높이 7.2m, 건물의 남측 정면 29.7m, 북측 좌우면 29.7m 이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채석강 층암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
- 신청 건물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잡석다짐(T150), 버림콘크리트(T50),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T300)지하구조부 단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부 조성을 위해 지표면 아래로 60cm 이상 터파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암반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채석강 일원의 지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신청 사업으로 인한 경관 및 지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2) *** 문화재위원(2020.6.7.)

- 사업 대상지는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1구역 및 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석강 층암절벽 위에 위치하여 격포 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각적 노출이 높은 지점임
- 건물 신축 시 채석강 층암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부결 12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9-10

10.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19.07.04. 문화재구역확대 신청(28필지 3,730,712㎡→32필지 3,830,316㎡)
 - '19.10.23 1차 보완자료 제출(관리계획 등)
 - '20.05.20. 2차 보완자료 제출(소유자 의견 등 상세자료)
 - '20.08.11.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관계전문가 3인 지정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 지정일 : 2009.9.18.
- (3) 신청내용

구분	기존 지정	확대 신청	비고
필지 수	28	32	증 7필지 (신규 4필지)
지정면적	3,730,712㎡	3,830,316㎡	증 99,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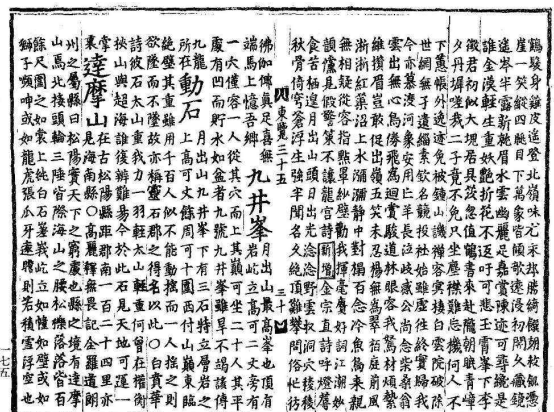
(4) 확대지정 사유

- 달마산은 삼황(三黃)이라고 하는데 불상과 바위, 석양빛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하며, 바위병풍을 뒤로 두르고 서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 창건 이후 각종 역사 문화적 유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마산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풍치 절경의 산사임.

- 도솔봉·달마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섬과 미항사, 달마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 산 능선부에 풍화에 매우 강한 규암층이 길게 노출되면서 발달한 흰색의 수직 암봉들이 병풍같이 늘어서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임.

(5) 확대구역에 대한 주요기록

- (도솔암권역) 달마산과 도솔암 경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영암군편



<국역> 고려 때 중 무외(無畏)의 기(記)에, “전라도 낭주(朗州)의 속현을 송양현이라 하는데, 실로 천하에서 궁벽한 곳이다. 그리고 그 현의 경계에 달마산이 있는데, 북쪽으로는 두륜산(頭輪山)에 접해 있고, 삼면은 모두 바다에 닿아 있다.

산허리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무성하여, 모두 백여 척이나 되는 것들이 치마를 두른 듯 늘어 서 있다. 그 위에 아주 흰 돌이 우뚝 솟아 있는데 당(幢)과도 같고 벽과도 같다. 흑 사자가 쩡그리고 하품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흑은 용과 범이 발톱과 이빨을 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며, 멀리 바라보면 쌓인 눈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산꼭대기 고개 동쪽에 있는 천 길이나 되는 벽 아래, 미타혈(彌陀穴)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대패로 민 듯 칼로 깎은 듯한 것이 두세 사람이 앉을 만하다. 앞에는 층대가 있어 창망한 바다와 산들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있는 것 같다. 그 구멍으로부터 남쪽으로 백여 보를 가면 높은 바위 아래 작고 네모진 연못이 있는데, 바다로 통하고 깊어 바닥을 알지 못한다. 그 물은 짜며, 조수를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 땅의 끝편에 도솔암(兜率庵)이 있는데, 그 암자가 앉은 형세가 훌륭하여 그 장관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이곳은 화엄조사(華嚴祖師) 상공(湘公)이 터 잡고 지은 곳이다. 그 암자 북쪽에는 서굴(西窟)이 있는데, 신라 때 의조화상(義照和尚)이 처음 살면서 낙일관(落日觀)을 수리한 곳이다. 서쪽 골짜기에는 미황사(美黃寺)통교사(通教寺)가 있고, 북쪽에는 문수암(文殊庵)관음굴(觀音窟)이 있는데, 그 상쾌하고 아름다움이 참으로 속세의 경치가 아니다. 또 수정굴(水精窟)이 있는데, 수정(水精)이 나온다. 지원(至元) 신사년 겨울에 남송(南宋)의 큰 배가 표류해 와 이 산 동쪽에 정박했을 때, 한 고관이 산을 가리키면서 주민에게 묻기를, “내가 듣기에 이 나라에 달마산이 있다 하는데, 이 산이 그 산 아닌가.” 하므로, 주민들이 “그렇다.” 하였다. 이에 그 고관은 즉시 그 산을 향하여 예를 하고, “우리나라는 다만 이름만 듣고 멀리서 공경할 뿐인데, 그 대들은 이곳에서 성장했으니 부럽고 부럽도다. 이 산은 참으로 달마대사(達摩大師)가 상주할 땅이다.” 하고 그림으로 그려 갔다.

위대하다, 이 산이여. 어찌 매우 높고 빼어난 모양이 산과 바다의 아름답고 풍부함을 다 했을 뿐이라. 그 성적(聖跡)과 영험한 자취도 많았도다. 또 외국인 들까지도 우러르고 공경함이 저와 같았다. 그러나 먼 지방에 있어서 세상에는 등반하여 감상하는 자가 없으니 슬프다. 만약 세상을 버리고 도를 찾는 선비로서 절정에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대사(大士)가 세상 밖에서 이른바 전하지 못한 묘함을 얻은 자가 있다면, 저 소림(少林)에서 진수(眞髓)를 얻은 자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 할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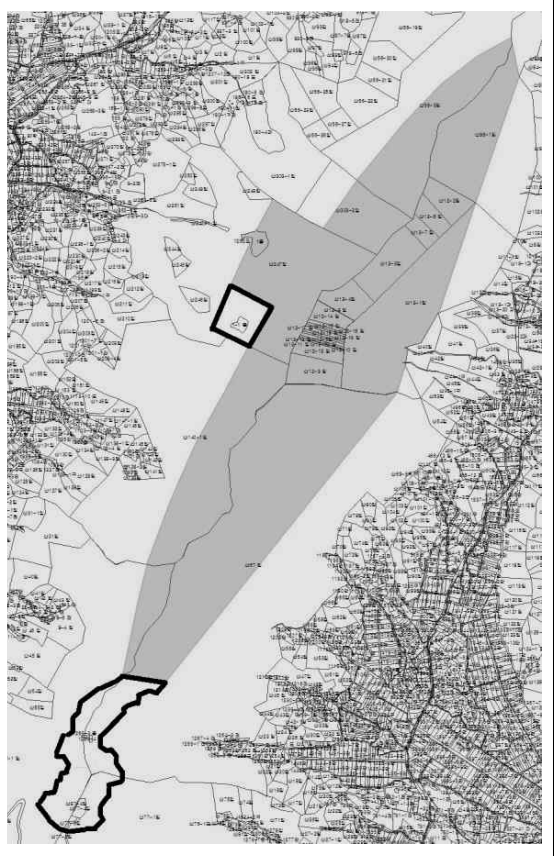
○ (부도전 권역) 미황사 창건에 관련된 미황사사적비(美黃寺事蹟碑)

- 연대 : 숙종 18년(1692)년
- 구성 : 거북 받침돌(龜趺), 몸돌(碑身), 머릿돌(螭首)
- 규격 : 높이 370cm(좌대제외), 비신높이 290cm, 폭 129cm. 두께 33cm

- 작성 : 민암(閔黯 1636~1693)이 짓고 이우(李俣 1637~1693)가 씀
- 원문 일부(탁본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 美黃寺碑銘(미황사비명) 有明朝鮮國全羅道靈巖郡達摩山美黃寺事績碑銘并序(유명조선국전라도영암군달마산미황사사적비명병서), <본문: 국역참조>, 崇植紀元後六十五年壬申九月日立碑杜忍崇植紀元後六十五年壬申九月日立碑杜忍(송식기원후육십오년임신구월일립비두인송식기원후육십오년임신구월일립비두인), (음기 끝에는 청나라 연호사용)康熙三十一年壬申五月日詔功瑞眞□書(강희삼십일년임신오월일홍공서진□서)
- 본문국역 : 신라 경덕왕 8년(749) 8월에 돌로 된 배(石船) 한 척이 아름다운 범패 소리를 울리며 사자포(땅끝마을) 앞바다에 나타났다. 배는 며칠 동안이나 사람들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돌아서면 다가오고 했는데, 의조(義照)화상이 두 사미승과 100여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했더니 육지에 닿았다. 배 안에는 금으로 된 사람(金人)이 노를 잡고 있었고 금으로 된 함과 검은 바위가 있었다. 금함 안에는 화엄경, 법화경 같은 경전과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40성중·53선지식·16나한의 상과 탕화 등이 들어 있었고 검은 바위를 깨뜨렸더니 검은 소가 뛰어나와 금세 큰 소가 되었다. 그날 밤 의조화상의 꿈에 금인이 나타나서, 자기는 우전국(인도) 왕인데 금강산이 1만불을 모실만하다 하여 불상들을 신고 갔으나 이미 절이 많이 있어서 봉안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금강산과 비슷한 이곳을 보고 찾아왔는데, 경전과 불상을 소에 신고 가다가 소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짓고 안치하면 국운과 불교가 흥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의조화상이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신고 나섰더니 소가 달마산 중턱에서 한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한참 가다가 크게 울며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의조화상은 소가 처음 멈췄던 곳에 통교사(通敎寺)를 짓고 마지막 멈춘 곳에 미황사를 지었다. 절 이름을 미황사라고 한 것은 소의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해서 ‘미’자를 넣고 금인의 빛깔에서 ‘황’자를 딴 것이라 한다. <1996년 김위석 집필(한국학중앙연구원)>

라. 검토의견 (*****)

- 당해 명승의 주요 경관을 이루는 산 능선에 이어지며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점인 도솔암과 미황사의 역사성에 관련된 부도전 권역을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솔암은 암자만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나, 달마산 능선이 도솔암 권역까지 계속 이어지므로 암자 주변의 능선까지 추가하여 기존 지정구역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청안(***)	검토안(****)
범위	부도전 권역, 도솔암(암자)	부도전 권역, 주변을 포함한 도솔암 권역
특징	기존 지정구역과 이격된 도솔암은 암자만을 지정확대함	암자를 포함, 기존 구역과 연결된 능 선(해발 300m 이상)까지 확대
확대면적	99,604m ² (국유·사유 7필지)	282,512m ² (국유·사유 13필지)
확대구역 (굵은 선)		

<신청안과 검토안 비교대조>

마.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2020.8.11.)

<*** 문화재위원>

- 해남 8경의 하나인 도솔암은 달마산 중턱에 나있는 돌레길 달마고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풍경이 수려하고 인접 지역과 능선에서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조망이 펼쳐져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음. 아울러, 도솔암 주변 산 능선부에는 변성퇴적암 계통의 규암질 암석단애가 급경사의 암봉을 이루는데, 흰 빛을 띠고 있어 수려하고 기묘한 경관을 연출함

- 미황사 부도전 구역도 물고기, 문어, 거북 등의 문양이 부도가 다수 있으며, 미황사 사적비에도 조선 숙종 민암이 지은 미황사 창건과 설화가 새겨져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구역을 역사적, 경관적, 자연적 가치를 지닌 미황사 부도전 및 도솔암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자연 및 문화 자원의 보전 및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도솔암 구역이 당초 지정구역과 분리되어 있어 지정구역 규모와 형태 결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도전 구역에 일부 역사적 가치가 낮은 건물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예술적 조형미가 뛰어나며,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도전 영역과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조망성이 탁월한 도솔암 영역에 대하여 문화재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면은 지면 분할선을 명확히 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 사찰은 평지형에서 산지형으로의 변화과정에서 고승들의 사리를 모시는 탑의 형태와 배치에 있어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시대 <釋門喪儀抄, 1963>, <僧家禮儀文, 1670>에 근거하면 불가의례에 있어 길(吉)보다는 상(喪)을 중시하여 부도밭이 사찰 내 중요한 구성공간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본 대상지인 미황사는 통시성에 근거한 역사적 진정성을 증명할 다양한 유물적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도밭과 탑비임. 부도밭은 시대별 고승들의 수행의 산 증거이며 미황사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찰의 구성요소임. 현재 남측에 위치한 부도밭은 지정구역 외에 존재하여 훼손이 우려되어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함.
- 미황사 남측 부도밭과 탑비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석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부도탑의 변화과정과 고승들의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탑비에 새겨진 고승들에 관한 내용들은 불교 역사의 중요 자료임. 부도탑에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동물들이 새겨져 있으며 이것들은 타 사찰 부도탑의 문양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형상들이 존재하고 있음.
- 도솔암은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근경 중경 원경을 이루며 겹겹이 솟아 수목화와

같은 수려한 자연산악을 형성하고 있음. 단 주변의 다수의 등산로와 관광객으로 인해 경관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최소 중경과 근경의 보호와 미황사와 연계된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확대가 필요함.

바.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 면적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기존	해남군 신청안	문화재청 검토안		
북평면 서정리 1	중	16,889	16,889	16,889	16,889	***	
북평면 서정리 1-1	중	6,878	-	6,878	6,878	***	부도전
북평면 서정리 산140-1	임	1,309,091	441,262	441,262	441,262	국(***)	
북평면 서정리 산247	임	1,128,742	475,242	559,897	559,897	***	부도전
북평면 서정리 산303-2	임	239,702	144,678	144,678	144,678	국(***)	
북평면 서흥리 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423,070	국(***)	
북평면 서흥리 산12-2	임	52,896	52,896	52,896	52,896	***외1	
북평면 서흥리 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109,289	***외2	
북평면 서흥리 산12-4	임	54,094	54,094	54,094	54,094	***외1	
북평면 서흥리 산12-5	임	6,208	6,208	6,208	6,208	***외8	
북평면 서흥리 산12-6	임	33,060	33,060	33,060	33,060	***	
북평면 서흥리 산12-7	임	23,334	23,334	23,334	23,334	***외1	
북평면 서흥리 산12-8	임	1,108	1,108	1,108	1,108	***외11	
북평면 서흥리 산12-9	임	63,574	63,574	63,574	63,574	***외1	
북평면 서흥리 산12-10	임	3,305	3,305	3,305	3,305	***외4	
북평면 서흥리 산12-11	임	1,108	1,108	1,108	1,108	***외8	
북평면 서흥리 산12-12	임	3,305	3,305	3,305	3,305	***외8	
북평면 서흥리 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31,789	***외8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기존	해남군 신청안	문화재청 검토안		
북평면 서흥리 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27,047	***	
북평면 서흥리 산12-15	임	6,612	6,612	6,612	6,612	***	
북평면 서흥리 산12-16	임	3,308	3,308	3,308	3,308	***	
북평면 서흥리 산12-17	임	3,308	3,308	3,308	3,308	***	
북평면 서흥리 산12-18	임	6,612	6,612	6,612	6,612	***	
북평면 서흥리 산12-19	임	3,308	3,308	3,308	3,308	***외11	
북평면 서흥리 산12-20	임	3,892	3,892	3,892	3,892	***외11	
북평면 영전리 산77-1	임	1,333,235	-	-	56,660	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4	임	8,026	-	-	8,026	(주)**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5	임	40,530	-	-	2,562	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6	임	10,032	-	-	1,839	(주)**	도솔암
북평면 이진리 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275,971	국(***)	
북평면 평암리 1269-3	종	388	-	388	388	국(***)	도솔암
북평면 평암리 1269-4	종	621	-	621	621	국(***)	도솔암
북평면 평암리 산67	임	2,751,602	1,089,534	1,092,888	1,215,395	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61-1	종	256	-	256	256	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1	임	1,317,290	95,499	98,951	239,458	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2	임	7	-	-	7	국(***)	도솔암
송지면 마봉리 산87-4	임	506	-	-	506	(주)**	도솔암
현산면 월송리 산56-3	임	1,005,917	331,410	331,410	331,410	국(***)	
38필지			3,730,712	3,830,316	4,162,930		

사. 참고사진



<도솔암 권역>



<부도전 권역>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검토안으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명, 조건부 가결 1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9-11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2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달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수달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9.29. ~ 2020.10.20.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 -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 - 허가개체 : 40개체 - 허가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 허가기간 : 2020.10.1. ~ 2020.12.31.	<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 -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 - 허가개체 : 40개체 - 허가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 허가기간 : 2020.10.1. ~ 2020.12.31.	<허가>
	4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황새 유전자 분석을 위한 혈액채취 - 허가내용 : 황새 포획 및 혈액채취 - 허가개체 : 36개체 - 허가장소 : 예산군 예산황새공원 사육동 ○ 허가기간 : 2020.9.29. ~ 2020.10.16.	<허가>
	5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등 13종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학술연구를 위한 시료채취 - 허가내용 : 치료중 폐사, 안락사 개체에 대한 시료채취(혈액, 내부장기 채취)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개체 : 74개체(소쩍새 17, 솔부엉이10, 수리부엉이6, 독수리17, 매2, 새매7, 수달1, 올빼미3, 원앙2, 참매2, 큰고니1, 흑고니1, 황조롱이5) ○ 허가기간 : 2020.10.15. ~ 2020.11.15. 	
	6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등 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폐사된 천연기념물 폐기 - 허가내용 : 치료중 폐사하거나 인락사한 개체 소각 - 허가개체 : 6종 237개체(독수리17, 소쩍새 46, 솔부엉이39, 수리부엉이75, 참매15, 황조롱이45) ○ 허가기간 : 2020.10.15. ~ 2020.11.15. 	<허가>
	7	동물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 허가내용 : 꼬치동자개 포획 및 시료채취, 위치추적기 삽입, 실내 계류 후 방사 - 허가개체 : 15개체 이내 - 허가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 남강 일대 ○ 허가기간 : 2020.10.06. ~ 2020.12.31. 	<허가>
	8	동물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 허가내용 : 꼬치동자개 포획 및 시료채취, 위치추적기 삽입, 실내 계류 후 방사 - 허가개체 : 15개체 이내 - 허가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대 ○ 허가기간 : 2020.10.06. ~ 2020.12.31.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 허가내용 : 꼬치동자개 포획 및 시료채취, 위치추적기 삽입, 실내 계류 후 방사 - 허가개체 : 15개체 이내 - 허가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자호천 일대 ○ 허가기간 : 2020.10.06. ~ 2020.12.31. 	<허가>
	10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리부엉이 세력권 및 서식지 자료 확보 - 허가내용 : 수리부엉이 위치추적기 부착 및 방사 - 허가개체 : 2개체 - 허가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일대 ○ 허가기간 : 2020.10.12. ~ 2020.11.1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1	동물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전시 교육 목적 사육 - 허가내용 : 수달 사육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장소 : 서울대공원 ○ 허가기간 : 2020.10.12. ~ 2025.10.11. 	<허가>
	1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 -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 - 허가개체 : 40개체 - 허가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강, 고부천, 새만금 일대 ○ 허가기간 : 2020.10.12. ~ 2020.12.31. 	<허가>
	13	동물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어름치 공강 내 복원 - 허가내용 : 어름치 방류 - 허가개체 : 2,000개체 - 허가장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675 ○ 허가기간 : 2020.10.12. ~ 2020.10.16. 	<허가>
	14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산양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산양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10.15. ~ 2020.10.29. 	<허가>
	15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증식복원 목적 사육 - 허가내용 : 증식된 산양 사육 - 허가개체 : 6개체 - 허가장소 : 산양증식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20.10.15. ~ 2025.10.14. 	<허가>
	16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증식복원 목적 사육 - 허가내용 : 산양 사육 - 허가개체 : 4개체(기 허가개체 사육기간 연장) - 허가장소 : 양구 산양증식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20.10.15. ~ 2025.10.14. 	<허가>
	17	동물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산양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산양 소각 - 허가개체 : 8개체 ○ 허가기간 : 2020.10.15. ~ 2020.10.29.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8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 사업명 : 강서지역 전력구공사 시추조사 (14공)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641번지 외 13개소(허용기준 2,4,5구역) - 사업내용 · 지반조사 14공, 직경 76mm, 심도 20~70m ○ 허가기간 : 2020.9.22.~2020.10.31.	<허가>
	19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삼락동 29-43번지(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13.04㎡(원형/반경 6m) · 풍향풍속계, 온습도계, 장수량계, 기압계, 측기탑(높이 10m), 자료처리기, 전원공급장치 설치 ○ 허가기간 : 2020.10.1.~2020.10.31.	<허가>
	20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군사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62, 산62-1, 산60-3번지(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1동(지하 1층), 연면적 119.70㎡, 높이 6.55m,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기간 : 2020.9.29.~2021.9.30.	<허가>
	21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지하수 개발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산293-3번지(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관정 1공 200mm, 굴착깊이 100m ○ 허가기간 : 2020.10.8.~2020.11.30.	<허가>
	22	식물	천연기념물 제283호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 신청인 : ***** ○ 허가내용 : 종자 30립 채집 ○ 허가기간 : 2020.9.24.~ 2020.12.31.	<허가>
	23	식물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475, 1475-1, 1476-1(2구역,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5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8,120㎡, 건축면적 4,133.904㎡(변경없음) · 연면적 7,551.278㎡(증 328.18㎡포함), 조경면적 1,632.36㎡(증 238㎡ 포함) · 용도변경: 공동주택→관광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 허가기간 : 2020.11.1. ~ 2021.10.31.	
	24	식물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꽃밭 조성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978-104 (1구역, 문화재구역 연접) - 사업내용 · 면적/내용 : 200㎡/국화 6000본 식재 ○ 허가기간 : 2020.10.5. ~ 2020.11.30.	<허가>
	25	식물	천연기념물 제404호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생육환경 개선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맥문동 109,625본(식재면적 4,385㎡), 수관청소 16주, 보호책 설치 1,100m ○ 허가기간 : 2020.10.5. ~ 2020.11.30.	<허가>
	26	지질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우수관로 신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16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우수암거(PCBOX 1.0×1.0) L=132 m, 집수정 (1500×1500) 3개소 · 날개벽 및 U형 수로관 설치(L=4.0M) 1식 · ASP 표층 포장 A= 329 M2 등 ○ 허가조건 - 굴착과정시 지질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고 도출된 홍조단괴는 세계유산본부와 협의하여 회수 ○ 허가기간 : 2020.9.21. ~ 2020.12.31.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7	지질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부잔교 설치 등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잔교 설치(4.8m×30m 2기, 4.8m×20m 1기, 4.5m×15m 2기, 3.8m×10m 1기) · 안전난간 설치 265m · 안전난간 조명 265m · CCTV 설치 1개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잔교 색상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변경 - 경관조명은 당초계획 위치가 아닌 주상 절리 위치(부잔교 반대편)로 설치 ○ 허가기간 : 2020. 9.22. ~ 2020.12.31. 	<조건부 허가>
	28	지질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주차장 포장(잔디블록)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71-1번지(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주차장 포장(227㎡) ○ 허가기간 : 2020.9.29. ~ 2021.11.30. 	<허가>
	29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태풍피해 전기선로 복구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38, 산4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태풍피해 전기선로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구간 : 안양암~내원암 방향 845m · 터파기 및 되메우기 550m, 석축쌓기 295m · 콘크리트 기초(철근) 170m, 철다리 철거 1개소 4각 암각설치 4개소 · 철거 후 신설 : F-CV 1CX100mm(ELP 80) 300m, F-CV 4CX35mm(ELP 65X2) 300m, CNCV-W 60SQ/1CX3(ELP125Φ) 230m ○ 허가기간 : 2020.10.12. ~ 2021.10.1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0	명승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연구용 바람관측장비 설치 -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번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관측장비 설치 1식(함체, 센서포함) ○ 허가기간 : 2020.10.8.~2021.10.7. 	<허가>
	31	명승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관광농원 부지조성 - 사업위치 : 경기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332-1 (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부지 4,998㎡ (야영장, 소매점 등) ○ 허가기간 : 2020.10.08.~2022.10.07. 	<허가>
	32	명승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변공원 진입도로 조성 - 사업위치 :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 290 (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13,543㎡(폭6m), 아스콘포장 등 ○ 허가기간 : 2020.10.08.~2021.12.31. 	<허가>
	33	명승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선관 정비 -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6-4번지(문화재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담장이설, 외관보수, 화장실 정비 ○ 허가기간 : 2020.10.16.~2021.10.15. 	<허가>
	34	명승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한식문화교육관 건립 -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2번지(문화재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음식교육관 162.81㎡ *앞면은 노출, 뒷면은 지하화(옥상은 마당 연장) ○ 허가기간 : 2020.10.16.~2021.10.15.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5	명승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방포항 정비 - 사업위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7-15번지(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방파제에 양육부두 설치51.4m, 육상부 호안정비(매립준설 없음) ○ 허가조건 : 상부 구조물 설치는 일체 불가 ○ 허가기간 : 2020.10.19.~2023.12.31. 	<조건부 허가>
	36	명승	명승 제98호 설악산 십이선녀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해피해 탐방로의 복구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1755번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수해 유실 구간) 데크로드 13m ○ 허가기간 : 2020.10.21.~2020.12.31.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37	동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문발제방 정비공사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송촌동 738~탄현면 법흥리 1792-147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및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668m(흙쌓기 33,802m³, 순성토 40,961m³, 기초전석부설 1,694m², 매트리스 7,450m², 시트파일 항타 1,746본, 가물막이 753n)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습지보호구역내 행위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바람. - 사업추진시 개리, 재두루미 등 조류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라며, 겨울철 철새 도래기간(12월~익년 3월)은 사업을 중지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2019.8.28.~2020.10.31. - 변경 : 2019.8.28.~2021.10.31.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8	식물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도동 측백나무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커뮤니티센터 신축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249(2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8m)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 건축물 최고높이 감소(9.8m→9.75m), 연면적 증가(354.87㎡→397.66㎡, 계획대지면적 감소(622㎡→576㎡) ·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공사 : 백목련 등 4종 9주 제거, 느티나무 등 3종 23주 이식, 산철쭉 등 3종 1470주 식재, 꽃잔디 등 3700본 식재, 잔디 421㎡식재 · 철거공사 : 경계석 철거 208m, 점토블럭 철거 135㎡, 아스팔트포장 철거 254㎡,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289㎡, 파고라 1개소 철거 · 이설공사 : 운동시설 6개소, 파고라 1개소, 자전거보관대 2개소, 컨테이너 2개소 등 · 포장공사 : 화강석 경계석 366㎡, 흙콘크리트 포장 280.9㎡, 화강석블럭 포장 126㎡, 점토블럭 포장 172㎡, 아스콘 포장 696㎡, 투스콘 포장 82.91㎡ 등 ○ 허가기간 : 2019.6.18. ~ 2020.11.30. 	<허가사항 변경 허가>
	39	지질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 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조업시설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23번지(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변경 : 남동쪽 → 북쪽 - 부1동 위치 변경 : 동쪽으로 20m 이동·회전 - 북동측 옹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 옹벽 : H=2~4.5m, L=44m → H=2~4.5m, L=19m · 보강토 옹벽: H=2~4.5m, L=40m → H=1.1~4.2m, L=57m · 남측 전석 쌓기 : H-1.5~2.5m, L=68m → H-1.5~3m, L=30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시 화석전문가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화석 산출 시 즉시 신고. ○ 허가기간 : 2020.9.21. ~ 2021.6.30.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0	지질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 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조업시설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21-7번지(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변경 : 동쪽 → 남쪽 - 남동측 옹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옹벽 : H=1.5~4.5m, L=44m → H=2~4.5m, L=10m · 보강토옹벽 : H=2~4.5m, L=48m → H=1.1~4.2m, L=56m - 북측 L형옹벽 변경 : H=2.5~4.5m, L=34m → H=3.5~4.5m, L=34m ○ 허가조건 : 절토작업 시 화석전문가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화석 산출 시 즉시 신고. ○ 허가기간 : 2020.9.21. ~ 2021.6.30.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41	명승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도솔암(참당암) 하수관로 정비 - 사업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96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설치 - 변경내용 : 관로 위치 일부 조정 - 허가조건 : 보물 대응전 보호구역 및 주변 50m 내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할 것 (당초허가와 동일) ○ 허가기간 : 2020.9.23.~2020.12.31.(동일)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42	명승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백양사 경내도로 개설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경내도로 정비 - 변경내용 : 도로노선 및 담장의 위치 조정, 다향각 이축 및 화장실 철거 취소 ○ 허가기간 : 2020.10.14.~2021.10.13.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접수 12명

